

조선 후기 호적대상 호구차정 원리*

— 언양현 가좌책을 중심으로

金建泰**

I. 서론	IV. 호적작성 과정 추론
II. 분석대상 자료와 지역	V. 결론
III. 가좌책의 호구파악	

• 국문초록

1875년 경상도 언양현 천소동 가좌책에서 원호의 경제력[노비보유, 가옥규모, 농우보유, 경작면적] 수준이 협호보다 낮은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부에서 배정한 직역자 수를 채우려면 元戶를 차정할 때 主戶의 신분을 먼저 따져야 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렇게 호적대상 원호를 차정할 때 주호의 경제력은 부차적 요소로 작용했다. 조선 후기 호구정책은 경제력이 넉넉한 자연가뿐만 아니라 경제력이 열악한 자연가도 원호가 되고, 빈한한 자연가뿐만 아니라 부유한 자연가도 협호나 적외호가 되는 것을 용인하였다. 수령과 色吏들의 탐욕, 즉 조선 후기 지방관아의 부정부패 때문에 빈한한 원호가 호적에 등재된 것이 아니었다. 이 같은 호구정책은 호충이 갑자기 증가한 세조대 이후 정착되었다. 세조대 이후 군역자 폭증으로 군인의 사회적 위상이 추락하게 되자 양인 상층은 군역을 회피하게 되었다. 한편 양인 하층은 군역부담을 견디지 못해 몰락했고, 이는 15세기 후반 이후 노비증가의 주된 요인이 되었다. 이렇듯 세조대 이후 부유한 양인 상층이 적외호로 남고, 빈한한 양인이 원호[군역자]가 되는 현상이 구조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가좌책, 신분, 언양현, 협호, 적외호, 원호, 천소동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미래기초학문분야 기반조성사업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I. 서론

호적은 일찍부터 연구되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들의 주목도 받았다. 그 결과 호적을 활용한 신분사, 가족사, 경제사 관련 연구는 일일이 검토하기 어려울 정도로 풍성하다. 호적에 대한 연구가 축적됨에 따라 호적의 성격이 어느 정도 밝혀졌고, 그 결과 기존 연구에 내재된 방법론·이론적 한계도 분명해졌다.¹⁾

호적의 자료적 성격은 단성·대구·울산호적이 전산화됨으로써 분명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호적 전산화 작업은 새로운 연구분야를 창출하기도 했다. 한국에서 역사인구학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호적 전산화 작업의 덕택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²⁾ 그런데 호적 전산화 작업은 예기치 못한 상황을 초래한 점도 있다고 여겨진다. 즉 호적 전산화 사업이 계속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호적을 활용한 연구는 오히려 시들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전산화된 호적을 활용한 연구로 인해 기존 연구의 한계점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기존 연구 방법으로는 의미 있는 연구성과를 제출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이는 전산화된 호적을 활용한 연구가 조선 후기 역사상을 재정립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호적 연구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조선 후기 역사상을 새롭게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으로 호적의 자료적 성격을 더욱 분명히 하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개발해야 한다. 이 두 가지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전자와 관련된 성과가 축적되면 새로운 연구방법론도 찾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1875년 언양현 上北面 泉所洞에서 작성한 『乙亥³⁾ 六月 泉所洞家座人口姓名成冊』⁴⁾(이하 가좌책으로 약함)을 주목하고자 한다.

1) 다음 책을 보면 호적 관련 연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단성호적대장 연구팀,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손병규 편, 『조선왕조 호적,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위하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0.

2) 손병규 외, 『한국 역사인구학연구의 가능성』,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6.

3) 가좌책과 1861년 언양호적대장의 인물을 비교해보면 乙亥년이 1875년임을 알 수 있다.

4) 울산시박물관 소장. 울산대학 이종서 교수가 이 가좌책의 존재를 알려주었다. 이종서 교수에 감사한다.

언양현은 언양호적이 발견됨으로써 이전부터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다른 호적에서 보이지 않는 挾人을 싣고 있는 호적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언양호적에 기반한 ‘主戶-挾戶’론은 제출과 동시에 큰 주목을 받았다.⁵⁾ 그 요지는 현실에서 경제력이 튼실한 주호가 빈한한 협호를 신분적[奴婢] 혹은 경제적[作人]으로 지배하고 있었는데, 국가가 이 둘을 하나의 호로 묶은 다음 부세납부의 책임을 주호에게 지움으로써 주호가 협호를 지배하는 것을 정당화시켰다는 것이다.

‘주호-협호’론이 조선 후기 경제사 연구의 수준을 한 단계 진전시킨 것은 분명하지만 허점도 적지 않다. 첫째, ‘주호’는 협호나 적외호에 비해 경제력이 튼실하다는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 ‘주호-협호’론이 가지는 이러한 문제점은 18세기 대구 조암방 양안과 호적을 분석한 연구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18세기 조암방에서는 빈한한 원호와 부유한 적외호가 적지 않게 관찰되었다.⁶⁾

둘째, 조선 후기 주호의 직역 고하와 경제력 강약 사이에 매우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전산화된 호적을 활용한 연구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즉 조선정부는 도이상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軍布를 수취했고, 이 때문에 군현에서는 빈한한 常人을 원호로 등재시킨 다음 그들로 하여금 군포를 부담하게 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성과를 종합해 보면 군현에서 원호를 차정할 때 자연가 家長의 신분[職役]을 일차로 고려하고, 그다음 그의 경제력을 따졌음을 알 수 있다.⁷⁾ 이러한 사실은 여기서 살펴볼 1875년 천소동 가좌책에서도 확인된다.

이하 논의 전개를 위해 용어와 관련된 개념을 분명히 해둔다. ‘주호-협호’론에서는 主戶를 호적에 등재된 元戶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했는데, 조선 후기 자료에 등장하는 주호는 호적의 원호를 의미하는 용어가 아니고 원호의 대표자를 뜻한다.⁸⁾ 따라서 이 글에서는 주호가 원호를 의미할 때는 따옴표 있는 ‘주호’로 쓰고, 호의 대표자를 의미할 때는 조선 후기 자료를 따라 따옴표 없는 주호로 쓴다. 한편 ‘주호-협호’론의 협호는 언양호적에서 협인으로 기재되었지만 논의의 편의상 여기에서도 협호로 쓰기로 한다.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호는 조선 후기 자료에 근거해 籍外戶로 칭한다. 그리고

5) 이영훈, 『조선후기 사회경제사』, 한길사, 1988.

6) 정진영, 「18세기 호적대장 ‘호’와 그 경제적 기반」, 『역사와 현실』 39, 한국역사연구회, 2001.

7) 김건태, 「호구출입을 통해 본 18세기 호적대장의 편제방식」, 앞의 『단성호적대장연구』.

8) 정진영, 「18세기 호적대장 ‘호’와 그 경제적 기반」, 『역사와 현실』 39, 한국역사연구회, 2001.

현실에 존재하는 집은 자연가로 부르기로 한다. 즉 현실에 존재하는 집을 호적과 관련해서 사용하면 호, 그렇지 않으면 자연가로 칭하기로 한다. 즉 자연가가 호적에 올라가지 않으면 적외호, 호적에 올라가면 원호, 호적에 올라가되 원호에 통합되면 협호로 쓰기로 한다.

II. 분석대상 자료와 지역

1. 가좌책 작성과정

1876년 호적 작성을 위해 1875년 봄,⁹⁾ 언양현은 호구를 먼저 면별로 배정하고 이를 다시 각 동리에 할당했는데, 이때 개별 직역자 수도 함께 배정했다. 동리별 호구총은 관민 간 절충과 타협을 통해 확정되었다. 관민 간에 원활한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때도 있었는데, 이 경우 관이 일방적으로 호구총을 배정해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1888년 5~11월에 있었던 寧海府와 府內 里 사이의 호구분쟁도 관이 일방적으로 호총을 배정해서 일어난 사건이었다.¹⁰⁾

1875년 6월 천소동은 언양현에 제출하기 위해 가좌책을 만들었다. 조선 후기 군현에서는 가좌책 작성을 대체로 마을 자율에 맡겼다. 19세기 무렵 경상도 경산은 각리의 頭民을 籍有司로 삼아 해당 마을의 호구단자 수합을 착실하게 거행하도록 함으로써 면임의 입감을 배제하도록 하였고, 1887년 평안도 성천부에서는 頭民들이 모여 公議를 거쳐 적합한 戶를 세우고 등재하지 않을 戶는 파기하는 형태로 抄戶하였다.¹¹⁾ 천소동은 먼저 자연가를 크게 유학을 칭할 수 있는 1그룹과 별대를 칭해야 하는 2그룹으로 나누고, 그 다음 1그룹 가장의 경제력을 살펴 원호 47호, 2그룹 가장의 경제력을 고려하여 원호 3호를 차정했다고 여겨진다. 이 과정에서 유학을 칭할 수

9) 19세기 호적은 식년보다 한 해 앞서 가을에 작성되었다. 권내현, 「조선후기 호적의 작성과정에 대한 분석」, 앞의 『단성호적대장연구』.

10) 송양섭, 「1888년 영해부 호구분쟁에 나타난 戶政運營의 일단」, 『조선시대사학보』 82, 조선시대사학회, 2017.

11) 송양섭, 「茶山 丁若鏞의 戶口運營論」, 『戶籍 작성의 원리와 사회현상』,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HK)연구소 국내학술회의 발표집, 2020.02.14.

있는 부유한 자연가의 일부가 적외호로 남고, 군역을 부담하던 빈한한 자연가 일부가 원호로 차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1875년 가좌책을 통해 원호 차정과 관련된 다양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가좌책은 매우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좌책의 첫 번째 호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戶幼學柳是檜年四十七
妻權氏齡二十五
率子童蒙守業年十六
合四口內 男三 女一
正寢三間
行廊二間
鐵鼎一座
田五斗
畚四斗
牛無

이같이 가좌책은 개별 호의 인구, 가옥, 전답, 솥[鼎], 농우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이같이 개별 호와 관련된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를 싣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 호를 戶(이하 원호라 칭함), 俠(이하 협호라 칭함, 挾과 같은 의미라고 판단됨)으로 구분했다. 원호와 협호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는 틀은 동일하다. 원·협호 구분은 조선 후기 林川·求禮·順天 가좌책¹²⁾에서 보이지 않는데, 이는 천소동 가좌책의 자료적 가치가 특별함을 의미한다.

천소동 가좌책은 부역을 공유하는 집단을 하나의 호로 파악하였다. 즉 가좌책의 호는 곧 自然家이다. 마을에서 가좌책을 작성할 때 개별 자연가 단위로 그들의 경제력을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조선 후기의 관행이었다. 따라서 부모

12) 해당 지역 가좌책에 대해서는 다음 글 참조. 김용섭, 「조선후기 無田農民의 문제-『林川郡家座草冊』의 분석」, 『중보판조선후기농업사연구』 1, 지식산업사, 1995; 이종범, 「19세기 후반 부세제도의 운영과 사회구조-전라도 구례현의 사례」, 『동방학지』 89·90,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0; 허원영, 「18세기 후반 순천부 농민의 존재양태와 농업경영: 『순천부서면가좌책』(1744)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47, 한국외국어대 역사문화연구소, 2013.

〈표 1〉 1875년 가좌책 호구등재 현황

성격 \ 호구	1차		추가		합계	
	호	구수	호	구수	호	구수
원호	40	155	11	34	51	189
협호	54	128	12	26	66	154
합계	94	283	23	60	117	343

와 자식이 서로 다른 자연가에 거주하면 그들은 가좌책에서 서로 다른 호로 파악되었다. 예컨대, 14호 宋鍾敏(37세)과 17호 宋鍾佑(30세)는 32호 宋彩奎(61세)의 아들이다.¹³⁾ 가좌책은 개별 호의 순서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분석의 편의를 위해 기재 순서대로 호 번호를 주었다.

가좌책은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과정 또한 특별하다. 가좌책은 표지를 제외하면 87면으로 되어있는데, 71면까지 94호를 싣고 나서 72면에 ‘洞中’이라고 쓰고 7명이 수결을 쳤다. 그리고 73면에 1명이 수결을 치고, 86면까지 23호를 차례로 등재하고 있다. 여기서는 71면까지를 1차 작성분, 73면부터를 추가 작성분이라고 칭한다. 1875년 언양현에서 개별 리의 호구총 배정을 두고 관민 사이에 분쟁이 있었고, 1차 할당된 호구총[94호]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천소동에 약간의 호가 추가[23호]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차 할당과 추가 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즉 1차분 94호와 추가분 23호는 임의적으로 결정된 것일까 아니면 이전 호구총과 관련이 있을까?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가좌책에 등재된 호구를 살펴보자(<표 1> 참조).

1차로 94호 283구, 추가로 23구 60구를 파악했다. 이 가좌책을 근거로 1876년 호적을 작성했다면 원호는 51호가 되고, 거기에 기재된 인구는 343구가 된다. 즉 협호에 속한 사람들은 원호의 협인으로 1876년 호적에 기재되었을 것이다. 이 호구수가 가지는 의미는 18~19세기 언양호적¹⁴⁾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표 2> 참조).

13) 이들은 모두 1861년 언양호적에서 천소동 9통 3호로 편제되었다.

14) 『慶尙道彦陽縣戶籍大帳』釜山大學校韓國文化研究所 간행 영인본, 1989.

〈표 2〉 연양호적 천소동 호구 현황

연도 호구	1795	1797	1825	1861	1875 (가좌책)
호	41	41	38	51	51
구	360	378	330	335	343
호당구수	8.8	9.2	8.7	6.6	6.7

가좌책 1차 원호수는 1795~1825년 천소동 호적 호수와 비슷하고, 호당구수는 7.1구로 1861년 호당구수와 유사하다. 한편 가좌책 전체 원호 51호는 1861년 호적의 원호수와 일치하고, 두 장부의 구수 또한 거의 비슷하다. 이로부터 다음과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연양현은, 호수는 1825년 이전 상황을, 호당구수는 1861년 실상을 참작하여 천소동 호구수를 1차로 배당했다가, 그 후 추가로 원호 11호와 구 60구를 더 할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추가 배정으로 원호수와 호당구수를 1861년과 거의 일치시켰다고 할 수 있다. 연양현에서 1876년 천소동 호구총을 배정할 때 이전 식년의 호구총을 참작했던 것이다.

조선 후기 여타 군현에서도 개별 마을에 호구총을 할당할 때 그 이전 식년의 호구총을 참작했던 것으로 보인다. 1888년 5~11월에 있었던 寧海府와 府內 里 사이의 호구 분쟁도 1885년 호적의 호총보다 증액된 마을에 의해 주도¹⁵⁾된 데서 당시의 관행을 엿볼 수 있다. 정약용은 이러한 관습을 아예 문서화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호적을 작성할 때 각 마을별로 해당 식년 호총을 제시하고 거기에 더하여 앞 식년 호총과 비교하여 그 증감내역을 註記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예컨대, “柳川리는 이제 20호로 책정한다(이전의 호총은 15호였으니 이제 5호를 더한다).”는 방식이다. 그리고 口總은 호총 증감비율에 맞추어 적절한 수치를 산정하여 말미에 제시하도록 하였다. ‘유천리는 20호이니 이제 男口 39와 女口 41을 책정한다’와 같은 형태였다.¹⁶⁾ 천소동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정약용의 주장은 당시의 관습을 문서화하자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15) 송양섭, 앞의 2017 논문.

16) 『목민심서』 제6부 호전6조 호적. 송양섭, 앞의 2020 논문.

2. 1875년 천소동 모습

1875년 천소동은 20세기 초 盤泉里 일대이다(<그림 1> 참조). 천소동은 1875년 이후 分洞과 合洞 과정을 거쳐 반천리로 되었다. 천소동은 1894년 이전 어느 시점에 泉所·釜堤里로 분동되었고,¹⁷⁾ 부제리는 1907년 이전 盤湖里¹⁸⁾로 개명되었다. 그리고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천소리(이하 자료에 천소리로 나오더라도 천소동으로 칭함)와 반호리가 합쳐져 반천리¹⁹⁾로 되었다. 1875년 천소동과 20세기 초 반천리는 비슷한 지역에 위치하지만 두 시기 里의 개념은 매우 다르다. 1875년 천소동은 명확한 공간이 없었다. 조선 후기에는 집터와 그 주변을 가리켜서 里 또는 洞이라 했고, 논밭이 펼쳐진 곳은 들[眞, 坪]이라 했다.²⁰⁾ 그에 비해 20세기 초 반천리는 지리적 구획이 분명했다. <그림 1>에서 盤湖와 泉下를 아우르는 곳이 반천리다.²¹⁾

천소동[반천리]은 뒤로 산을 등지고 앞으로 태화강을 두고 있는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들판이 산과 태화강 사이에 펼쳐있는 관계로 천소동에는 논밭이 어우러져 있었다. 답의 비율은 1875년 가좌책에서 47.5%, 1907년 『慶尙南道彦陽縣籌版-丁未九月北一洞籌版』(이하 주판으로 칭함)에서 37.7%로 나온다(<표 3> 참조). 30년 정도 간격을 두고 작성된 두 자료에서 답 비율이 크게 차이나는 까닭은 자료의 성격이 달랐기 때문이다. 가좌책과 주판의 洞 개념이 다르다. 가좌책의 洞은 명확한 지리적 경계가 없이 그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과 그 주변을 의미했고, 주판의 洞은 지리적으로 명확히 구획된 지역을 가리킨다. 따라서 가좌책은 등재된 호의 경작지만을 파악했고, 주판은 일정 구역의 모든 땅을 싣고 있다.

17) 다음 두 자료를 참조하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다. 1861년 『慶尙道彦陽縣戶籍大帳』 上北面 松北里, 東部里, 南部里, 於音里, 盤松里, 泉所里; 1894년 『嶺南邑誌-彦陽』(奎12174) 上北面 屬里七, 邑內(南部, 東部), 松北於音(二洞距官門三里), 盤松(距官門十里), 泉所釜堤(二洞距官門十五里).

18) 『慶尙南道彦陽縣籌版-丁未九月北一洞籌版』(奎15020), 松臺, 東部, 西部, 路東, 南部, 於音, 盤松, 泉所, 盤湖.

19) 越智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中央市場, 1917.

20) 김건태, 「조선후기 마을 위상과 전세량의 관계」, 『한국사론』 65, 서울대 국사학과, 2019.

21) 1918년경 반천리 경계는 1912년 제작된 彦陽郡 上北面盤泉里原圖, 上北面盤松里原圖를 참조하면 확인할 수 있다.



자료: 『朝鮮五萬分一地形圖』, 朝鮮土地調査局測量, 1918년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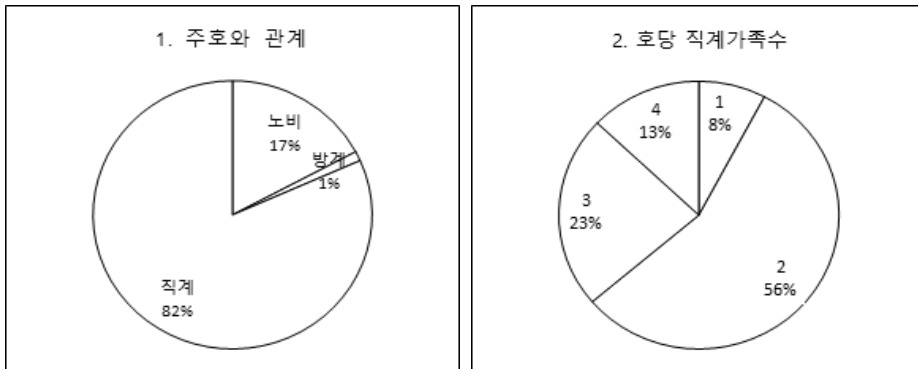
〈그림 1〉 20세기 초 반천리 전경

〈표 3〉 천소동 농지구성 현황

(단위: 두락)

지목 \ 연도	1875	(%)	1907	(%)
답	524	(47.5)	883.1	(37.7)
전	578	(52.5)	1315.3	(56.1)
대			144.3	(6.2)
합	1102	(100)	2342.7	(100)

호적은 정부가 배정한 호구수만큼만 파악했기 때문에 주판이 구획하고 있는 지역에 자리 잡고 있던 자연가 가운데 가좌책에서 누락된 경우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주판이 구획한 지역의 자연가는 1875년 가좌책 호수 합계인 117집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가좌책의 인적 구성에 대해 살펴보자(<그림 2> 참조). 가좌책에 등재된 인구는 대부분이 직계가족(주호 포함)이고, 그다음이 노비와 방계가족 순이다. 가좌책에 등재된 직계가족은 해당 호[자연가]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117호 가운데 직계가족이 2명(주호+1인)인 호가 절반 이상을



〈그림 2〉 1875년 가좌책에 등재된 인구 현황

차지하는 데서 그러한 사실을 읽을 수 있다. 가좌책의 인구기재 양상은 여타지역 조선 후기 호적과 대동소이하다.

노비는 59호에 등재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1861년 언양현 천소동 호적에서 확인된다. 1861년 언양호적에 실린 노비들 대부분은 실존하지 않은 인구임²²⁾을 감안하면 가좌책에 실린 노비도 가공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즉 가좌책의 노비명은 해당 호의 호명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주목한 사실은 실존하지 않던 가공의 노비도 구수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4번 호는 주호, 처, 자, 노로 구성되었는데, 인구합을 보면 남2, 여2이다. 이같이 가공의 인물도 호적에 올라가면 실존하는 사람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 호적은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마술을 부리는 장부였던 것이다.

천소동 사람들 대부분은 조그마한 초가집에서 생활했다. 117호의 가옥은 162동[正寢, 行廊, 翼廊]으로 구성되었는데, 그중 기와 건물은 정침 3동에 불과했다. 117호의 가옥구조를 보면 正寢만 있는 집이 63%, 행랑이 딸린 집이 37%, 익랑도 갖춘 경우가 2호다(<표 4> 참조). 표에서 정침, 행랑, 익랑의 규모는 개별 건물의 크기다. 예컨대 53번 호는 정침 3칸, 행랑 3칸, 익랑 3칸, 합계 9칸 집이다. 117호의 63%는 초가삼칸으로 된 정침만 있었다. 천소동 원경은 20세기 초 공주군 우정면의 마을 모습과 대동소이하다.²³⁾ 초가집이 웅기종기 모여있는 농촌 모습을 담고 있는 개항기 사진첩에서 본 장면이 떠오른다.

22) 김건태, 「戶名을 통해 본 19세기 職役과 率下奴婢」, 『한국사연구』 144, 한국사연구회, 2009.

23) 김건태, 「대한제국 호적과 양안의 상호 관련성」, 『한국사론』 64, 서울대 국사학과, 2018.

〈표 4〉 1875년 천소동 가옥 규모

칸	명칭	정침	(%)	행랑	(%)	익랑	(%)	합계	(%)
9								2	(1.7)
8									
7								11	(9.4)
6								9	(7.7)
5								17	(14.5)
4		15	(12.8)					6	(5.1)
3		34	(29.1)	22	(51.2)	1	(50.0)	38	(32.5)
2		64	(54.7)	21	(48.8)	1	(50.0)	30	(25.6)
불명		4	(3.4)					4	(3.4)
합계		117	(100)	43	(100)	2	(100)	117	(100)

대부분의 집이 정침만 있었던 만큼 솔도 대체로 하나[1座]만 보유했다(<표 5> 참조). 대체로 쇠솔을 보유했지만 소수는 쇠솔을 갖지 못해 흙솔에 밥을 지었다. 흙솔은 움집·나무젓가락과 더불어 빈곤의 상징이었다.²⁴⁾ 가좌책도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준다. 흙솔에 밥을 짓는 13호 가운데 경작지를 보유한 호는 3호에 불과하며 그나마 모두 병작지(2두락, 7두락, 3두락)였다. 그에 반해 쇠솔을 보유한 79호 경작면은 평균 13두락이며, 그들 가운데 경작지가 없는 경우는 6호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가좌책은 25호에 대해서는 솔에 관한 정보를 남기지 않았다.

가좌책은 솔을 철저히 파악했다고 할 수 없지만 農牛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117호 가운데 농우에 대한 정보가 없는 사례는 6호에 불과하다(<표 5> 참조). 천소동에서 자기 농우로 농사짓는 호는 전체의 30% 남짓에 지나지 않았다. 농우 보급률이 낮은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작지를 보유한 84호 가운데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47호가 타인의 농우를 빌려 쟁기질했다. 그리고 117호 가운데 경작

24) 『承政院日記』 순조 3년 12월 18일 기묘, (權)峻日 …… 假令千室之邑, 班戶·驛戶與吏奴·保人, 校院募屬, 殆居其半, 就其半千之中, 而富戶之行賂圖免, 又居其半, 則其爲應役者, 僅可數百, 而直是無所控訴之最窮民也, 架簷之屋, 不蔽風雨, 入其室審其所有, 亦不過土鼎·木匙, 數介無儲之瓶而已.

〈표 5〉 1875년 천소동 농가의 술·농우 보유현황

(단위: 호)

座/隻	정/우	술			농우	(%)
		쇠술	흙술	기록 무		
3		1				
2		12			1	(0.9)
1		66	13		36	(30.8)
무					74	(63.2)
불명				25	6	(5.1)
합계		79	13	25	117	(100)

지를 보유하지 않은 호는 33호였는데, 그 가운데 농우를 보유한 사례는 없다. 牛는 食用이 아니라 農用이었던 만큼 농사를 짓지 않은 집들은 양육에 적지 않은 공력이 들어가는 농우를 보유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넓은 경작지를 가진 농가는 농우도 많이 보유했다. 가작지 70두락을 경작하는 농가가 있었는데, 이 호가 바로 천소동에서 유일하게 농우 2隻을 보유한 농가다(<표 5> 참조). 넓은 가작지를 경작하는 사례는 19세기 농촌에서 간간이 찾아진다. 예컨대, 19세기 경상도 예천 맞질에 거주하던 박득녕이 그러한 존재다.²⁵⁾ 117호는 家作農(36.8%), 가작+竝作農(7.7%), 竝作農(27.3%), 無耕作農(28.2%)으로 구성되었다(<표 6> 참조). 일부 無耕作農은 소유지를 모두 병작지로 방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가좌책은 과부호 8호를 등재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경작지를 보유한 사례는 1호(병작지 9두락)에 불과하다. 일부 과부들은 일손이 없어 소유지를 모두 병작지로 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한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무경작농이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들과 10두락 미만을 경작하는 호를 합하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25) 안병직·이영훈 편저, 『맞질의 농민들』, 일조각, 2001; 김건태, 「19세기 집약적 농법의 확산과 작물의 다각화」, 『역사비평』 101, 역사문제연구소, 2012.

〈표 6〉 1875년 천소동 농가의 경작 유형과 규모

(단위: 호)

두락 \ 경작지	가작	가작 + 병작	병작	무	합계	(%)
40 이상	3				3	(2.6)
30~40	4				4	(3.4)
20~30	5	2	1		8	(6.8)
15~20	6		2		8	(6.8)
10~15	16	4	9		29	(24.8)
5~10	5	3	15		23	(19.7)
5 미만	4		5		9	(7.7)
0				33	33	(28.2)
합계	43	9	32	33	117	(100)
(%)	(36.8)	(7.7)	(27.3)	(28.2)	(100)	

영세농으로 가득 찬 농촌모습은 19세기 전라도 장흥부 모산동에서도 확인된다. 모산동은 1858년 還財 分排를 위해, 1869년 別備米 分排를 하려고 농가의 경작면적을 조사했다.²⁶⁾ 앞 자료는 35호, 뒷 자료는 39호를 신고 있는데, 문서작성 당시 모산동에 실재했던 농가 대부분을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두 가지 사실을 통해 모산동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1834년 30명이 참여하여 동계를 창설하였다. 19세기 후반 모산 洞中은 몇 차례에 걸쳐 개별 자연가[집]에 繡查錢을 분배하고 연 40%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당시 수사전을 분배받은 집수는 연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874년 36집이 가장 많았다.²⁷⁾ 두 자료는 19세기 후반 모산동 농가의 50% 정도가 경작지가 없거나 5두락 미만을 경작하는 영세농에 속했음을 전하고 있다(<표 7> 참조). 그리고 넓은 땅을 경작하는 농가가 없었음도 전한다. 19세기 후반 모산동에는 30두락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가 없었다.

26) 『戊午十月 日還財分排記』; 『己巳二月二十四日別備米分排記』 이 자료는 모산동 마을회관에 보관된 것을 교원대학 이용기 교수가 수집하여 필자에게 전해주었다. 이 교수에게 감사한다.

27) 김건태, 「조선후기 마을 사람들의 관계 맺기」, 『동아문화』 57,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2019.

〈표 7〉 전라도 장흥부 모산동 농가의 경작규모

(단위: 호)

두락 \ 연도	1858년 (%)	1869년 (%)
20~30	1 (2.9)	2 (5.1)
15~20	4 (11.4)	4 (10.3)
10~15	3 (8.6)	5 (12.8)
5~10	11 (31.4)	9 (23.1)
5 미만	16 (45.7)	16 (41.0)
0		3 (7.7)
합계	35 (100)	39 (100)

한편 1875년에 40두락 이상을 소유했던 농가의 농지규모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줄어들었다. 그 실상은 개별 호 단위로 경작지를 조사한 1875년 가좌책과 개별 지주 단위로 소유지를 파악한 1907년 주판²⁸⁾을 비교해보면 선명하게 드러난다. 1875년에 40두락 이상을 가작한 사람은 朴五卜(40두락), 千基五(42두락), 金志賢(70두락)이고, 1907년에 40두락 이상 소유한 지주는 李驥善(41.7두락), 宋瑛澤(45두락), 鄭龍福(46.5두락), 崔五卜(102두락)이다. 1875년 3인과 1907년 4인의姓이 다르다. 즉 1875년의 3인 혹은 그 후손 가운데 1907년까지 40두락 이상을 소유한 사례가 없다. 1875년 3인의 땅이 분할상속 혹은 방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이 천소동 사례는 조선 후기에는 개인의 토지소유량이 주기성을 갖고 있었음을 전하고 있다. 한편 1907년 천소동 농지 소유자의 45%가 10두락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표 8> 참조). 조선 후기 농민경영은 소유·경작 양측면 모두 영세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28) 주판이 소유자 단위로 파악했음은 관둔 파악방법을 보면 알 수 있다. 주판은 관둔을 관청단위로 묶어서 파악했는데, 천소동(주판에서는 盤湖)에 소재한 5필지 12두락을 ‘官屯’으로 묶어 파악했다. 東部(洞)에서는 18필지 71두락을 묶어 兵屯으로, 64필지 210두락을 묶어 別砲屯으로, 8필지 19.5두락을 묶어 官屯으로 파악했다.

〈표 8〉 1907년 천소동 농지소유 현황

두락 \ 지주	명	(%)	두락	(%)
40 이상	4	(2.5)	235.2	(10.0)
30~40	10	(6.3)	338.5	(14.4)
20~30	31	(19.5)	771.1	(32.9)
15~20	21	(13.2)	369.5	(15.8)
10~15	23	(14.5)	275.8	(11.8)
5~10	38	(23.9)	272.3	(11.6)
5 미만	32	(20.1)	80.3	(3.4)
합계	159	(100)	2342.7	(100)

Ⅲ. 가좌책의 호구파악

1. 원호와 적외호

1876년 언양호적이 가좌책 1차 파악분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다면 추가 파악된 호는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적외호가 된다. 여기서는 이러한 가정 하에 가좌책을 분석하기로 한다. 1차 파악분에서 職役者는 모두 78명 등장하는데, 그 중 1명(子, 童蒙)을 제외하면 모두 주호이다(<표 9> 참조). 이하 직역에 관한 분석은 주호만 대상으로 한다. 77명 대부분은 통상 군역에서 제외된다고 알려진 직역자로 유학 73명, 업무 1명, 한량 1명이다. 유학보다 위상이 낮게 평가되는 업무와 한량이 협호에서만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한편 군역자 別隊는 오직 원호에서만 2명 등장하는데, 별대는 騎兵으로 속오군의 한 병종이다. 별대호 2호는 모두 軍馬 1필을 보유하고, 1호는 軍畜도 경작한 데서 병종의 성격을 확인할 수 있다. 19세기 후반에는 속오군 체제가 크게 와해되었지만 일부 기능은 살아있었다. 그래서 병인양요 때 양주 속오군을 동원할 수 있었다.²⁹⁾

29) 배항섭, 『19世紀 朝鮮의 軍事制度 研究』, 국학자료원, 2002.

〈표 9〉 원호와 협호 주호 직역

(단위: 호)

직역 \ 호	1차 파악		추가 파악		합계		
	원호	협호	원호	협호	원호	협호	계
유학	38	35	9	4	47	39	86
업무		1				1	1
한량		1	1	1	1	2	3
별대	2		1		3		3
무		10		6		16	16
과부		7		1		8	8
합	40	54	11	12	51	66	117

1차 파악 때 속오군에 속한 별대 2명이 천소동에 배당되었기 때문에 洞中은 할 수 없이 원호로 별대를 파악하였다고 판단된다. 즉 1차 파악 때 적외호(<표 9>의 추가분)로 존재했던 자연가에 유학을 칭할 수 있었던 존재가 다수 있었던 사실이 그러한 추정을 가능케 한다.

1876년 언양호적이 가좌책에 근거해 작성되었다면 가좌책의 추가 파악분, 즉 1차 파악 때 적외호로 남아있던 自然家가 이제 호적에 등재되게 된다. 가좌책 추가 파악 때 등재된 직역자는 16명이며 그들은 모두 주호다. 이들 대부분은 통상 군역에서 제외된다고 알려진 직역자로 유학 13명, 한량 2명이다. 그 결과 천소동 직역자 93명 가운데 90명은 군역이 면제되는 직역을 가졌다. 추가로 파악된 군역자는 별대 1명인데, 그가 원호였다는 사실이 인상적이다. 이같이 천소동 군역자 3명은 모두 원호로 차정되었는데, 이로부터 언양현에서 천소동에 배정한 별대는 3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군역자가 별대 3명뿐인 데서 천소동 동중이 애써 군역자를 많이 파악하지 않으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동중이 군역자를 더 많이 파악하려고 했다면 더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직역이 없는 남성 주호가 무려 16명이나 되었던 데서 그러한 정황을 읽어낼 수 있다.

〈표 10〉 원호와 협호의 호당구수

(단위: 호)

구 \ 호	1차 파악		추가 파악		합계		
	원호	협호	원호	협호	원호	협호	계
6	1				1		1
5	11		1		12		12
4	16	7	3	1	19	8	27
3	7	12	4	2	11	14	25
2	4	29	2	7	6	36	42
1	1	6	1	2	2	8	10
합	40	54	11	12	51	66	117

우리는 별대호 3호에 주목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원호와 협호의 성격을 살펴보자. 주호 직역이 유학에 편중되었던 것과 달리 호당구수는 개별 호에 따라 크게 차이 났다(〈표 10〉 참조). 1차 파악분의 호당구수는 원호 3.9구, 협호 2.4구이다. 그런데 호당구수는 원호차정의 절대기준은 아니었다. 2구 이하인 호가 원호로 차정되기도 했으며, 4구 이상인 호가 협호로 되기도 했다. 심지어 평균 호당구수가 많은 호의 일부는 적외호(추가 파악분)로 남아있기도 했다. 호당구수가 많은 호를 협호로 만들면서까지 2인 이하의 호를 원호로 차정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들의 직역을 살펴보면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린다. 1명인 호는 별대, 2명인 호는 별대와 유학이다. 정해진 수만큼 별대를 차정하려다 보니 할 수 없이 소규모 호를 원호로 만들 수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추가 파악된 호의 인원은 1~5구였다. 호당구수는 원호 3.1구, 협호 2.2명이다. 이 때도 호당구수가 원호차정의 절대기준이 되지 못했다. 원호지만 1~2명인 원호가 있는 데 비해 3~4명인 협호도 있다. 1명인 호는 바로 별대호다. 추가 파악 때 별대 1호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호당구수가 적은 호임에도 원호로 차정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가좌책에 원호로 등재된 천소동 별대호 3호는 1명(2호), 2명(1호)으로 구성된 매우 단출한 호였다. 한편 별대호보다 호당구수가 더 많은 협호가 적지 않았다. 이로 부터 원호차정의 절대 기준은 직역이었고, 호당구수는 부차적 고려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1〉 원호와 협호의 노비보유 현황

(단위: 호)

구 \ 호	1차 파악		추가 파악		합계		
	원호	협호	원호	협호	원호	협호	계
1	35	14	8	2	43	16	59
0	5	40	3	10	8	50	58
합계	40	54	11	12	51	66	117

호당 노비보유 또한 원호가 더 많다(<표 11> 참조). 1차 파악분의 호당 평균 노비수는 원호 0.9구, 협호 0.3구다. 그런데 노비보유 규모는 원호차정의 절대기준은 아니었다. 원호 5호에는 노비가 없고 협호 14호는 노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아가 적외호(추가 파악분)로 남아있던 호 가운데 노비를 보유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노비 없는 호를 원호로 차정한 이유는 그들의 직역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짐작된다. 노비가 없는 원호 5호는 별대 2호, 유학 3호였다. 별대호를 차정하는 과정에서 노비 없는 호가 원호로 편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추가로 파악된 호의 노비보유 현황 또한 원호가 협호보다 양호하다. 원호 72.7%, 협호 16.7%가 노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때도 노비보유 규모가 원호차정의 절대기준이 되지 못했다. 노비를 보유하지 못했음에도 원호로 차정되기도 하고 노비를 보유했지만 협호가 된 경우가 있다. 우리가 주목하는 별대호도 노비를 보유하지 못한 사례에 속한다. 그 결과 가좌책에 원호로 등재된 천소동 별대호 3호는 모두 노비를 소유하지 못한 호였다. 별대호와 같이 노비를 보유하지 못한 원호가 있는 데 비해 노비를 보유한 협호가 무려 16호나 되었다. 이로부터 원호차정의 절대 기준은 직역이었고, 노비보유 현황은 부차적 고려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정침규모 또한 원호가 더 크다(<표 12> 참조). 1차 파악분의 정침규모 평균은 원호 3.2칸, 협호 2.7칸이다. 정침규모 또한 원호차정의 절대기준은 아니었다. 2칸짜리 정침을 보유한 원호가 있는 데 비해 3칸 이상 되는 정침을 보유한 협호도 많다. 심지어 4칸짜리 정침에 살면서 적외호(추가 파악분)로 남아있기도 했다. 별대호의 정침규모는 2칸과 3칸이다. 그에 비해 4칸짜리 정침을 소유한 호는 모두 유학호다. 별대호를 차정하는 과정에서 정침규모가 적은 호가 원호로 편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원호와 협호의 정침규모

(단위: 호)

칸 \ 호	1차 파악		2차 파악		합계		
	원호	협호	원호	협호	원호	협호	계
4	12	2	1		13	2	15
3	24	31	7	2	31	33	64
2	4	17	3	10	7	27	34
불명		4				4	4
합계	40	54	11	12	51	66	117

추가 파악된 호의 정침규모 또한 원호가 협호에 비해 크다. 정침규모 평균은 원호 2.8칸, 협호 2.2칸이다. 이 때도 정침규모가 원호차정의 절대기준이 되지 못했다. 2칸짜리 정침을 보유한 원호가 있는 데 비해 3칸짜리 정침에 거주하는 협호도 있었다. 추가 파악된 별대호는 2칸짜리 정침에서 생활했다. 이렇듯 가좌책에 원호로 등재된 천소동 별대호 3호의 정침 규모는 2호가 2칸, 1호가 3칸이다. 한편 적지 않은 협호는 별대호보다 넓은 정침에 거주했다. 이로부터 원호차정의 절대 기준은 직역이었고, 정침규모는 부차적 고려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행랑규모 또한 원호가 더 크다(<표 13> 참조). 1차 파악분의 행랑규모 평균은 원호 1.7칸, 협호 0.5칸이다. 정침규모 또한 원호차정의 절대기준은 아니었다. 원호 15호는 행랑이 없는 데 비해 3칸짜리 행랑을 보유한 협호도 적지 않다. 그리고 행랑을 갖추고도 적외호(추가 파악분)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다. 별대호 2호는 행랑을 갖추지 못한 데 비해 3칸짜리 행랑을 보유한 호는 모두 유학호다. 별대호를 차정하는 과정에서 행랑규모가 적은 호가 원호로 편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추가 파악된 호의 행랑규모 또한 원호가 협호보다 양호하다. 이 때도 정침규모는 원호차정의 절대기준이 되지 못했다. 행랑을 보유하지 못한 원호가 6호나 있는 데 비해 행랑을 보유한 협호가 존재한다. 추가 파악된 별대호 또한 행랑이 없는 사례에 속한다. 그 결과 가좌책에 원호로 등재된 천소동 별대호 3호는 모두 행랑이 없는 집에 살았다. 일부 원호와 별대호가 행랑 없는 집에 살았던 것과 달리 2~3칸짜리 행랑이 딸린 집에서 생활하는 협호가 적지 않았다. 이로부터 원호차정의 절대 기준은 직역이었고, 행랑규모는 부차적 고려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원호와 협호의 행랑규모

(단위: 호)

칸 \ 호	1차 파악		추가 파악		합계		
	원호	협호	원호	협호	원호	협호	계
3	18	2	1		19	2	21
2	7	10	4	1	11	11	22
무	15	42	6	11	21	53	74
합계	40	54	11	12	51	66	117

〈표 14〉 원호와 협호의 솔 보유 현황

(단위: 호)

좌	호	1차 파악		추가 파악		합계		계
		원호	협호	원호	협호	원호	협호	
쇠솔	3	1				1		1
	2	9	1	2		11	1	12
	1	28	27	7	4	35	31	66
흙솔	1	1	8		4	1	12	13
불명		1	18	2	4	3	22	25
합계		40	54	11	12	51	66	117

솔보유 현황 또한 원호가 더 양호하다(<표 14> 참조). 1차 파악분에서 흙솔에 밥을 짓는 원호는 1호에 불과하지만 그러한 협호는 적지 않다. 호의 성격에 따라 흙솔보유 현황이 크게 차이나는 것과 달리 쇠솔보유 현황은 호에 따라 큰 차이가 없다. 쇠솔보유 평균은 원호 1.3좌, 협호 1좌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별대 2호는 모두 쇠솔 하나씩 보유했다.

추가 파악된 호의 솔보유 현황 또한 원호가 협호보다 양호하다. 원호는 모두 쇠솔을 보유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는 2좌를 사용하기도 했다. 그에 비해 협호는 쇠솔 2좌를 보유한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흙솔에 밥을 지어 먹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쇠솔보유 유무는 원호를 차정할 때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가좌책에 원호로 등재된 천소동 별대호 3호는 모두 쇠솔 하나씩 보유한 집이다. 한편 별대호보다 더 많은 쇠솔을 보유한 협호는 한 집에 불과했다.

〈표 15〉 원호와 협호의 농우 보유 현황

(단위: 호)

척 \ 호	1차 파악		2차 파악		합계		
	원호	협호	원호	협호	원호	협호	계
2	1				1		1
1	19	9	8		27	9	36
무	20	45	3	12	23	57	80
합계	40	54	11	12	51	66	117

농우보유 현황 또한 원호가 더 양호하다(<표 15> 참조). 1차 파악분의 농우보유 규모는 원호 0.5隻, 협호 0.2척이다. 농우보유 규모 또한 원호차정의 절대기준은 아니었다. 농우를 보유하지 못한 원호가 무려 20호나 되는 데 비해 농우를 보유한 협호와 적외호가 17호나 된다. 농우보유 규모 또한 원호 차정에 영향을 미쳤지만 절대 기준으로 작용하지는 못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별대 2호 모두 농우를 보유하지 못했다.

추가 파악된 호의 농우보유 현황 또한 원호가 협호에 비해 양호했다. 원호는 평균 0.7隻을 보유했으나 협호는 전혀 보유하지 못했다. 원호 차정 때 농우보유 유무를 중요한 지표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추가 파악된 별대호는 농우를 보유하지 못했다. 그 결과 가좌책에 원호로 등재된 천소동 별대호 3호는 모두 농우를 보유하지 못한 호였다. 한편 별대호를 비롯하여 많은 원호가 농우를 보유하지 못했지만 일부 협호는 농우를 보유했다. 이로부터 원호차정의 절대 기준은 직역이었고, 농우보유 현황은 부차적 고려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경작규모 또한 원호가 더 양호하다(<표 16> 참조). 1차 파악분의 경작규모는 원호 16.8두락, 협호 4.6두락이다. 평균으로 보면 주호의 경작규모가 협호에 비해 넓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경작면적 측면에서 원호보다 양호한 협호가 적지 않다. 특히 경작지가 없거나 5두락 미만을 경작하던 원호가 2호나 되지만 10두락 이상을 경작하는 협호가 11호나 되었다. 심지어 20두락 이상을 경작하는 적외호가 2호나 되었다. 경작면적, 곧 경제력이 원호를 차정할 때 고려사항이지 절대 기준이 되지 못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한편 경작지가 없거나 5두락 미만을 경작하던 원호는 바로 별대호다. 별대호를 차정하는 과정에서 경작규모가 적은 호가 원호로 편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6〉 원호와 협호의 경작규모 현황

(단위: 호)

두락 호	1차 파악		추가 파악		합계		
	원호	협호	원호	협호	원호	협호	계
40 이상	2		1		2		3
30~40	3	1			3	1	4
20~30	7		1		8		8
15~20	5		3		8		8
10~15	15	10	4		19	10	29
5~10	6	13	1	3	7	16	23
5 미만	1	6	1	1	2	7	9
0	1	24		8	1	32	33
합계	40	54	11	12	51	66	117

추가 파악된 호의 경작규모 현황 또한 원호가 협호에 비해 양호하다. 원호는 평균 14.4두락을 경작했으나 협호는 2.0두락에 불과했다. 나이가 10두락 이상을 경작하던 호는 모두 원호로 차정되었다. 그 외중에 5두락 미만을 경작하던 농가가 원호로 차정되었는데, 그는 바로 별대호였다. 그 결과 가좌책에 원호로 등재된 천소동 별대호 3호는 모두 5두락 미만을 경작하던 농가였다. 한편 별대호보다 더 넓은 경작지를 가진 협호가 다수 존재했다. 이로부터 원호차정의 절대 기준은 직역이었고, 경작규모는 부차적 고려 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117호는 경작지 성격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성격이 다양했다. 그들은 가작지만 경작, 가작+병작지 경작, 병작지만 경작, 경작지가 없는[무경작농] 농가로 구성되었다. 이 네 유형의 농가는 원호·협호에서 모두 관찰된다(<표 17> 참조). 원호는 가작농이 56.9%(29/51)로 제일 많고, 협호는 무경작농이 48.5%(32/66)로 가장 많다. 한편 경제력, 즉 토지를 매개로 다른 농가를 지배할 수 없는 원호, 즉 가작+병작농, 병작농, 무경작농 등으로 존재하는 원호가 전체 원호의 43.1%(22/51)를 차지한다. 나이가 소유농지가 가작지 뿐인 원호, 즉 가작농으로 병작지를 대여하지 못한 원호도 있었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경제력[토지]으로 타인[작인]을 지배하는 원호는 절반에 미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 17〉 원호와 협호의 농업경영 유형

(단위: 호)

유형 \ 호	1차 파악		추가 파악		합계		
	원호	협호	원호	협호	원호	협호	계
가작	20	14	9	1	29	15	44
가작+병작	7	1		1	7	2	9
병작	12	15	2	2	14	17	31
무경작	1	24		8	1	32	33
합계	40	54	11	12	51	66	117

IV. 호적작성 과정 추론

이상에서 원호·협호·적외호의 직역, 호당구수, 노비보유, 가옥형태와 규모, 솔, 농우, 경작규모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든 면에서 원호가 다른 두 호에 비해 대체로 양호했다. 하지만 일부 원호는 협호에 비해 훨씬 열악한 처지에 있었는데, 대표적인 부류가 별대호였다. 이는 원호를 차정할 때 절대 기준으로 작용한 항목이 신분, 곧 직역이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조선 후기 군현에서 호적대장을 작성할 때 먼저 현존하는 자연가를 직역군별로 묶고, 그다음 각 직역군에서 생활형편이 좋은, 즉 경제력이 넉넉한 호를 우선적으로 원호로 차정했다. 이 과정에서 경제력이 넉넉한 호 일부(주로 유학호)가 적외호로 남기도 하고, 빈한한 호(주로 군역호)가 원호로 되기도 했던 것이다.

그런데 원호의 직계가족(주호 포함)만 가지고는 중앙에서 할당한 구충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경우 대체로 원호의 보유노비로 부족분을 채우고, 그래도 모자라면 방계가족을 등재했다. 대구·울산·단성호적이 이 같은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한편 노비와 방계가족까지 등재해도 구충을 채우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는데, 그 경우 협인[협호]을 원호의 솔하에 기재했다. 언양현이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언양현은 호충에 비해 구충이 지나치게 많아 협인을 등재해야만 할당된 구충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18~19세기 전국 호당평균은 대체로 4.1~4.2구³⁰⁾ 정도였는데, 언양은 앞의 천소동 호적에서 보듯이 9구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

〈표 18〉 호적과 가짜책에 등재된 사람들의 가족관계

(단위: %)

연도	1795	1798	1825	1861	1875
직계	53.1	54.8	50.0	62.4	41.4
협인	16.9	17.7	18.5	1.5	44.9
노비	14.7	14.0	14.8	16.7	12.5
방계	13.3	12.2	16.4	19.4	1.2
고공	1.9	1.3	0.3		
합계	100	100	100	100	100

여기서 연양호적 작성과정을 추론해보자. 1875년 가좌책을 토대로 호적을 작성했다면 원호와 협호를 어떻게 조합했을까? 실마리를 찾기 위해 천소동 호적에서 주호와 구성원의 관계를 살펴보자(<표 18> 참조). 직계가족은 1795~1861년 호적까지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다가 1875년 가좌책에서는 협인에 이어 2위가 된다. 이러한 현상은 호적과 가좌책에서 파악하는 호의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이미 보았듯이 가좌책은 개별 자연가를 독립된 호로 파악했지만 호적은 여러 자연가를 묶어 호 하나로 편제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아래에서 보듯이 金志賢·英奎 부자는 1861년 호적에서 한 호를 이루었으나, 1875년 가좌책에서 서로 독립호를 이루었는데, 김지현은 원호로 되고, 김영규는 협호로 되었다. 이러한 사례는 1861년 호적과 가좌책을 비교해보면 적지 않게 확인된다. 1861년에 직계가족으로 등재된 부류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1875년에는 협호로 파악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861년 호적

七統	四戸	幼學	金志賢	年六十陸
		次子	英奎	年三
		奴	萬奉	年庚辰
		婢	卜丹	年己亥

○ 1875년 가좌책

82	戶	幼學	金志賢	年八十一
		奴	萬奉	
83	俠	幼學	金英奎	年十九
		婢	卜丹	

30) 김건태,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인구기재 양상」, 앞의 『단성 호적대장 연구』.

한편 협인 비중은 1825년까지 2위를 차지하다가 1861년 4위로 되었다가 1875년 1위로 부상한다. 1875년 협인 비중이 그 이전에 비해 갑자기 높아지는 것과 달리 1875년 방계가족 비중은 그 이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든다. 1861년 호적 원호에는 방계가족이 많았으나, 이미 보았듯이 1875년 가좌책 호에는 방계가족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1861년에 방계가족으로 편제되었던 사람들이 1875년에는 독립된 호로 파악되었기 때문에 일어났다. 아래에서 보듯이 宋致奎·泰奎 형제는 1861년에는 한 호로 편제되었으나 1875년에는 원호와 협호로 나누어졌다. 이러한 사례는 1861년 호적과 가좌책을 비교해보면 더 확인된다. 즉 1861년에 방계가족으로 등재된 부류 대부분이 1875년에는 직계가족으로 파악된 셈이다.

○ 1861년 호적

七統 二戶 幼學	宋致奎	年三十七
	率弟 泰奎	年三十四
	嫂 梁氏	年三十三

○ 1875년 가좌책

28 戶 幼學	宋致奎	年五十三
20 俠 幼學	宋泰奎	年四十七
	妻 梁氏	岭四十三

이 같은 사실은 조선 후기 여타 지역 호적에 기재된 직계·방계가족 가운데 다수는 독립된 자연가에서 생활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한 가능성은 앞서 살펴본 가좌책과 20세기 초 호적대장에 기재된 가옥규모를 보면 더욱 높아진다. 즉 조선 후기 사람들은 대부분 2~3칸짜리 초가집에서 생활했다. 조선 후기 가옥규모로 보아 부모가 결혼한 자식 1쌍과 미혼의 자녀를 거느리고 사는 직계가족, 또는 부모와 미혼의 자식이 함께 사는 단혼소가족이 보편적인 가족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선 후기 호적의 호는 자연가 여럿을 묶은 편제호였던 것이다.

직계가족, 방계가족, 노비만으로 구충을 채우지 못할 경우 언양에서 보듯이 주호와 혈연·신분적으로 관계없는 사람을 호적에 등재하였다. 주호와 혈연·신분적으로 관계없는 부류를 흔히 협호라 칭한다. 그런데 가좌책은 주호의 직계·방계가족일지라도 독립된 자연가에 거주하면 그들을 협호로 분류한다. 언양호적을 살펴보면 협인으로 등재된 방계가족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조선 후기에는 주호와 다른 자연가에 거주하던 솔하인 전체를 협호라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언양호적에서 ‘挾’이 붙은 사람은 대체로 주호의 비혈연인이다. 따라서 여기서도 주호의 비혈연인

으로 구성된 호만 협호로 칭하기로 한다. 나이가 혼란을 줄이기 위해 호 단위로 분석할 때 원호와 협호로 구분하고, 원호 구성원의 관계를 분석할 때는 협호 대신 협인을 쓰기로 한다. 즉 호 구성원은 직계가족, 협인, 노비, 방계가족 4종류로 분류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혈연적으로 관계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었을까? 즉 어떤 기준이 있지 않았을까? 그 기준은 직역이었다. 주호와 신분적 위상이 비슷하거나 낮은 사람을 솔하인으로 편제했다(<표 19> 참조). 표에서 1계층은 유학, 2계층은 업유·한량·諸衛 등과 같은 위상을 가진 자, 3계층은 군역자다.³¹⁾ 1795년 상황을 보면 1계층 주호의 솔하인 중 직역자는 1계층 9명, 2계층 2명, 3계층 4명이다. 2계층 주호의 솔하인 가운데 직역자는 1계층 3명, 3계층 3명이다. 3계층 주호의 솔하인 중 직역자는 1계층 1명, 3계층 10명이다.

<표 19> 전체를 보면 주호보다 높은 위상을 가진 솔하인은 얼마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사례는 대부분 주호가 2계층이고 솔하인이 1계층인 경우다. 18세기 후반 이후에는 1계층과 2계층의 경계가 흐릿해진다는 점을 감안하면³²⁾ 그러한 사례에 속하는 주호와 솔하인의 신분이 거의 비슷했을 가능성이 있다. 솔하인이 1계층이고 주호가 3계층인 경우 솔하인의 신분이 주호보다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사례는 1795년 1건뿐이다. 이 솔하인은 주호의 妻父인데,³³⁾ 그가 지체 높은 양반일 가능성이 적다. 다시 말해 어엿한 양반이 驛吏를 사위로 맞은 것도 모자라 그의 솔하인으로 호적에 등재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처부 또한 현실에서는 군역을 졌거나, 군역자와 비슷한 사회적 위상을 가진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19세기에는 군적에 오른 자가 호적에 등재될 때 유학을 칭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³⁴⁾

31) 계층분류는 이준구, 『조선 후기 신분직역변동연구』, 일조각, 1993, 33면의 내용을 원용했다. 1계층 = 양반, 2계층 = 중인, 3계층 = 상민이다.

32) 19세기에는 개인의 직역이 1·2계층을 오가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난다. 송양섭, 「19세기 유학층의 증가양상」, 『역사와 현실』 55, 한국역사연구회,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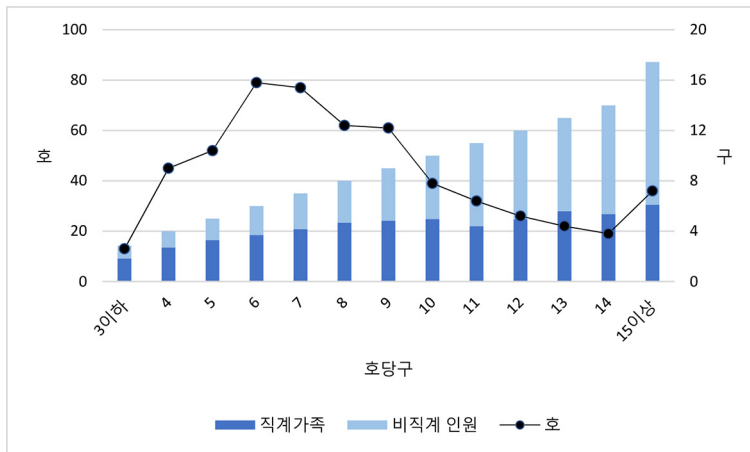
33) 1795년 『언양현호적』, (泉所里 三統), 五戶 驛吏朴大星 年肆拾陸 …… (妻)父 幼學金云宅 年陸拾貳.

34) 송양섭, 「18·19세기 단성현의 군역 파악과 운영」, 앞의 『단성 호적대장 연구』.

〈표 19〉 천소동 호적에 등재된 주호와 술하인의 직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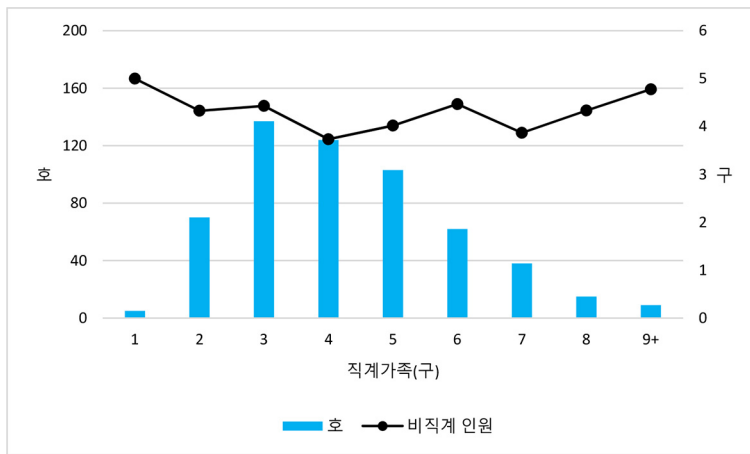
(단위: 명)

주호 술하	1795년			1798년			1825년			1861년		
	1	2	3	1	2	3	1	2	3	1	2	3
1계층	9	3	1	24	1		16			5		
2계층	2				1	1			1			
3계층	4	3	10	3	3	8	11	4	11			



〈그림 3〉 1798년 천북삼면 호당구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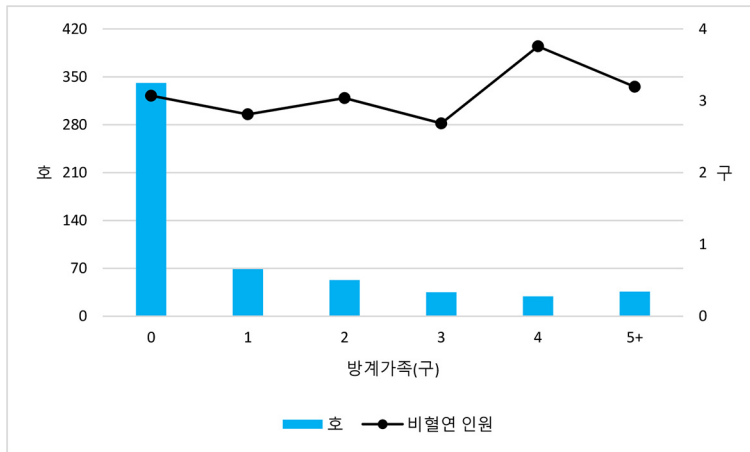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1798년 언양호적을 통해 주호와 다른 자연가에 거주하던 직계가족, 방계가족, 협인을 하나로 묶은 실상을 살펴보자. 호적에 등재된 호규모, 즉 호당구수는 다양한데, 직계가족(주호 포함. 이하 동)보다 비직계인원[협인·노비·방계가족]이 호규모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그림 3> 참조). 규모가 4명인 호나 15인 이상인 호의 직계가족수는 각각 2.7명, 6.1명으로 후자가 전자의 약 2배 정도지만, 그 호의 비직계인원수는 각각 1.3명, 11.3명으로 후자가 전자의 약 9배 정도다. 한편 1798년 호적에서 호당구수 6·7·8·9구 호가 전체의 46.9%(279호)를 차지하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호적을 작성할 때 가능하면 호당구수를 서로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4〉 1798년 천북삼면 호별 직계가족과 비직계인원 현황

개별 호의 직계가족수와 비직계인원[방계, 노비, 협호]수를 살펴보면 호적을 만들 때 호당구수를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직계가족 3·4·5명으로 구성된 호가 전체의 64.7%(364호)를 차지한다(<그림 4> 참조). 이는 주호부와 자녀(婦 포함) 1~3명으로 구성된 호가 가장 많았음을 의미한다. 한편 직계가족이 지나치게 적을 경우 비직계 인원을 많이 배정하여 호규모를 일정 정도 이상으로 만들었다. 그러한 사실은 직계가족 1명으로 구성된 호, 다시 말해 주호만으로 구성된 호의 비직계인원수가 가장 많은 데서 드러난다. 직계가족이 1명, 즉 주호 이외의 직계가족이 없는 호는 5호이고, 그러한 호의 비직계인원은 평균 5명이다. 그리고 직계가족 2·3명인 호의 비직계인원수가 직계가족 4명으로 구성된 호보다 더 많은 데서도 호 규모를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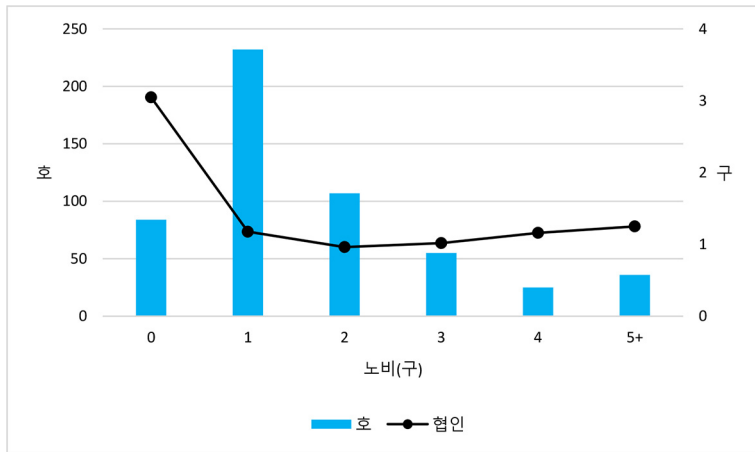
호적을 작성할 때 가능하면 호규모를 비슷하게 만들려고 애썼던 흔적은 개별 호의 방계가족과 비혈연인구[협인, 노비]수를 살펴보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 많은 호가 방계가족을 거느리지 않았는데, 그러한 경우가 341호(전체의 60.6%)이다(<그림 5> 참조). 그런데 비혈연인구는 방계가족 1~3명을 거느린 호보다 방계가족이 없는 호에서 더 많다. 방계가족이 없기 때문에 비혈연인구를 등재했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방계가족이 없는 호는 341호이고, 그러한 호의 비혈연인구는 평균 3.1명이다. 한편 방계가족이 1명인 호는 69호이고, 그러한 호의 비혈연인구는 평균 2.8명이다.



〈그림 5〉 1798년 천북삼면 호별 직계가족과 비혈연인원 현황

호적을 작성할 때 가능하면 호규모를 비슷하게 만들려고 애썼던 흔적은 개별 호의 노비수와 협인수를 살펴보아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455호(전체의 80.8%)는 노비와 협인을 모두 거느렸고, 84호(전체의 14.9%)는 노비 없이 협인만 거느렸다. 그런데 협인수는 노비를 거느린 호보다 노비를 두지 못한 호에서 압도적으로 많다(<그림 6> 참조). 협인수는 노비가 없는 호에서 3인 이상, 노비가 있는 호에서는 모두 1.5인 이하로 나타난다. 노비가 부족한 경우 협인으로 그 부분을 채웠음을 알 수 있다.

호적을 작성할 때 무슨 이유 때문에 직계가족, 방계가족, 노비, 협인을 적절히 조합하여 호규모를 비슷하게 만들려고 했을까? 개별 호의 경제력 규모를 비슷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1875년 가좌책에서 그러한 의도를 읽을 수 있다. 개별 호의 구수와 경작면적 사이에 높은 관련성이 찾아진다. 대체로 호당구수가 적은 호는 경작지가 없거나 적고, 호당구수가 많은 호는 경작면적이 넓었다(<표 20> 참조). 여기에서 개별 호의 부세량은 호당구수와 연동함을 알 수 있다. 이같이 조선 후기 연양현은 개별 호의 부세량을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 호 규모를 비슷하게 조절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림 6〉 1798년 천북삼면 호별 노비와 협인 현황

〈표 20〉 가좌책에 등재된 개별 호의 경작면적과 구수의 관계

(단위: 호)

두락 \ 구	1	2	3	4	5	6	합계	(%)
40 이상		1			1	1	3	(2.6)
30~40			1	3			4	(3.4)
20~30			3	2	3		8	(6.8)
15~20		2		5	1		8	(6.8)
10~15		6	10	6	7		29	(24.8)
5~10		10	4	9			23	(19.7)
5 미만	2	1	4	2			9	(7.7)
0	8	22	3				33	(28.2)
합계	10	42	25	27	12	1	117	(100)
(%)	(8.5)	(35.9)	(21.4)	(23.1)	(10.3)	(0.9)	(100)	

언양호적과 달리 조선 후기 여타 군현 호적에 등재된 사람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주호의 혈연가족이거나 노비(비부, 노처 포함)이다. 즉 언양호적의 협인과 같은 존재는 여타 지역 호적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언양호적의 협인, 곧 협호는 여타 지역에서는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적외호로 남았다.³⁵⁾ 이러한 군현에서는 어쩔

게 호적을 작성했을까? 먼저, 정부에서 배정한 호수에 해당하는 수만큼 자연가를 편제호로 만든다. 예컨대, 자연가 100호인 곳에 호적에 등재할 호 10호가 배정되면, 편제호 10호를 만든다. 자연가를 묶어 편제호를 만들 때 먼저 다른 집에 거주하는 직계가족과 노비를 하나로 묶는다.(1차 편제) 직계가족과 노비로 구성된 1차 편제호를 엮어 최종적으로 편제호 10호를 만든다.(2차 편제) 1차 편제호를 묶어 2차 편제호를 만들 때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2차 편제호를 만들 때 1차 편제호 대표[主戶]의 신분이 비슷한 호끼리 묶었다. 둘째, 2차 편제호를 만들 때 2차 편제호의 경제규모가 서로 비슷하도록 1차 편제호 수를 조절한다. 이 과정을 당시 사람들은 아래에서 보듯이 ‘分等編合 而作戶’³⁶⁾라고 했다.

戶稅之春秋分捧이 自是各郡已例이옵바 見今春戶稅徵收가 猶爲差晚 而各郡新查戶數 卽 鰥寡孤獨挾戶등을 沒數查計者也라 以此新查로 逐戶徵稅 卽 勢必未由에 徒致民寃이오 若欲分等編合 而作戶 卽 似無過於舊摠이오 徒費時月에 致愆徵收압고 搖動民心에 亦致民害뿐더러 以新以舊에 尙未承確定之處分故로 姑未得發令호옵고 緣由報告호오니 查照호오서 事係時急호오니 特爲電訓호시믄 伏望 光武十一年四月五日 慶尙南道密陽稅務官 李宗植³⁷⁾

위에서 보듯이 19세기 경상도 밀양에서는 호적을 작성할 때 실제로 ‘分等編合 而作戶’했다. 개별 자연가의 경제력과 家長 신분이 다양했던 만큼 현실에서 ‘分等編合 而作戶’하는 과정은 상당히 복잡했을 것이다.

자연가를 묶어 편제호를 만들고 나서, 호적에 등재할 때 우선 주호의 직계가족과 노비를 가지고 정부에서 배정한 직역자수와 구수를 맞추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는 방계가족을 추가한다. 이때 동일한 편제호에 묶인 사람 가운데 호적에 등재될 주호와 혈연이나 신분으로 엮이지 않은 존재, 즉 언양호적의 협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적외호로 남게 된다. 비록 적지 않은 자연가는 적외호로 남게 되지만 그들이 면세혜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다. 부세를 납부할 때 적외호는 원호를 도왔다. 정부가 개별 호의

35) 특정 지역의 자연가수와 호적에 등재된 호수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진영, 「조선후기 호적 ‘호’의 편제와 성격」, 『대동문화연구』 4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36) ‘分等編合 而作戶’ 개념은 정진영, 앞의 2001 논문 참조.

37) 이영훈, 앞의 1998 책, 272면에서 재인용.

규모와 부세부담량을 비슷하게 조절하는 관행은 이전부터 내려오던 전통이다. 아래 태조 1년(1392) 裴克廉·趙浚 等の 上言이 그러한 사실을 알려준다.

民丁은 16세로부터 60세에 이르기까지 役을 맡게 하는데, 10丁 이상이면 大戶가 되고 5정 이상이면 中戶가 되고, 4정 이하이면 小戶가 되게 하여 丁을 계산하여 백성을 등록시키고, 만약 徭徭役이 있으면, 大戶는 1명을 내고 中호는 둘을 합하여 1명을 내고 소호는 셋을 합하여 1명을 내어 그 역을 고르게 할 것이며, 만약 流亡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유를 묻고 더욱 불쌍히 여겨 救恤하여 完聚하게 하십시오³⁸⁾

위에서 보듯이 그들은 인정수에 따라 개별 호를 대·중·소호로 구분하고, 요역을 수취할 때 대호는 1호, 중호는 2호, 소호 3호에서 남정 1인씩 차출하자고 건의했다.

V. 결론

천소동 가좌책에서 원호의 경제력[노비보유, 가옥규모, 농우보유, 경작면적] 수준이 협호보다 낮은 사례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원호로 차정된 별대호 3호의 경제력은 매우 열악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戶口政策의 성격[원리]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빚어졌다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 배정한 직역자수를 채우려면 元戶를 차정할 때 主戶[원호의 대표자]의 신분을 먼저 따져야 했기 때문이다. 즉 원호를 차정할 때 그들의 경제력은 부차적 요소로 작용했다.

언양현은 호적을 작성할 때 가능하면 개별 호[원호와 협호가 결합된 호]의 경제력을 서로 비슷하게 만들려고 애썼다. 즉 경제력이 열악한 농가가 원호로 차정되면 경제력이 비교적 양호한 농가를 그들의 협호로 만들어 주었다. 언양현에서 원호와 협호를 결합할 때 매우 중요하게 고려했던 것이 있다. 바로 그들의 신분이었다. 원호와 신분적 위상이 비슷하거나 낮은 호를 협호로 편제하려고 애썼다. 즉 신분적 위상이

38) 『太祖實錄』 卷2, 太祖 1年 9月 24日. 이상국, 「고려시대 생산과 납세의 대상」, 『한국 중세 토지제도 연구의 제문제』, 중세사학회 월례 발표회 발표집, 2019.12.06에서 재인용.

높은 농가가 그들보다 신분적 위상이 낮은 원호의 협호로 편제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했다.

천소동 가좌책에 등재된 별대호가 3호에 불과하다고 해서 분석의 의미가 줄어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별대호를 차정해야 하는 것은 호구정책 원리에 해당하고, 별대호를 몇 호 차정할 것인지는 호구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특정 제도의 성격을 규정하는 근본 요소는 그 원리이지 사례수가 아니다. 조선 후기 호구정책은 경제력이 넉넉한 자연가뿐만 아니라 경제력이 열악한 자연가도 원호가 되고, 빈한한 자연가뿐만 아니라 부유한 자연가도 협호나 적외호가 되는 것을 용인하는 제도였음을 천소동 가좌책이 전하고 있다.

원호가 협호나 적외호에 비해 경제력이 대체로 넉넉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원호를 차정할 때 경제력을 제일 먼저 고려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 견해를 따르게 되면 천소동 가좌책에서 확인되는 현상을 호구정책 시행과정의 문제로 돌려야만 한다. 수령과 色吏들의 탐욕, 즉 조선 후기 지방관아의 부정부패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빚어졌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호구정책 운영이 그렇게 문란했다면 천소동 가좌책과 같이 다양한 항목을 자세하게 파악하는 장부를 만들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천소동 가좌책은 조선 후기 사회가 나름의 운영원리에 의해 작동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조선시대 호적의 원호를 차정할 때 주호의 신분을 제일 먼저 고려했다는 사실은 조선 후기 호적정책을 살펴보면 쉽게 수궁이 간다. 조선 후기 호적에 등재되는 모든 호는 직역[人頭稅]과 요역 수취 대상이었다. 따라서 軍役者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빈한한 자연가를 원호로 등재시킬 수밖에 없었다. 그 구체적 실상을 1875년 천소동 가좌책이 전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乙亥 六月 泉所洞家座人口姓名成冊』, 울산시박물관 소장
『慶尙道彦陽縣戶籍大帳』,釜山大學校韓國文化研究所 간행 영인본, 1989
『慶尙南道彦陽縣籌版·丁未九月北一洞籌版』(奎15020)
『牧民心書』
『承政院日記』
彦陽郡 上北面盤泉里原圖, 上北面盤松里原圖
『朝鮮五萬分一地形圖』
『朝鮮王朝實錄』
越智唯七,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中央市場, 1917
- 김건태, 『조선후기 양반가의 농업경영』, 역사비평사, 2004
김용섭, 『증보판조선후기농업사연구』 I, 지식산업사, 1995
단성호적대장 연구팀, 『단성 호적대장 연구』,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배향섭, 『19世紀 朝鮮의 軍事制度 研究』, 국학자료원, 2002
손병규 편, 『조선헌조 호적,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위하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20
손병규 외, 『한국 역사인구학연구의 가능성』,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6
안병직 · 이영훈 편저, 『맛질의 농민들』, 일조각, 2001
이영훈, 『조선후기 사회경제사』, 한길사, 1988
이준구, 『조선후기 신분직역변동연구』, 일조각, 1993
- 김건태, 「戶名을 통해 본 19세기 職役과 率下奴婢」, 『한국사연구』 144, 한국사연구회, 2009
_____, 「19세기 집약적 농법의 확산과 작물의 다각화」, 『역사비평』 101, 역사문제연구소, 2012
_____, 「대한제국 호적과 양안의 상호 관련성」, 『한국사론』 64, 서울대 국사학과, 2018
_____, 「조선후기 마을 사람들의 관계 맺기」, 『동아문화』 57, 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2019
송양섭, 「19세기 유학층의 증가양상」, 『역사와 현실』 55, 한국역사연구회, 2005
_____, 「1888년 영해부 호구분쟁에 나타난 戶政運營의 일단」, 『조선시대사학보』 82, 조선시대사학회, 2017
_____, 「茶山 丁若鏞의 戶口運營論」, 『戶籍 작성의 원리와 사회현상』,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인문한국(HK)연구소 국내학술회의 발표집, 2020.02.14
이상국, 「고려시대 생산과 납세의 대상」, 『한국 중세 토지제도 연구의 제문제』, 중세사학회 월례 발표회 발표집, 2019.12.06

- 이종범, 「19세기 후반 부세제도의 운영과 사회구조-전라도 구례현의 사례」, 『동방학지』 89 · 90, 연세대 국학연구원, 1990
- 정진영, 「18세기 호적대장 ‘호’와 그 경제적 기반」, 『역사와 현실』 39, 한국역사연구회, 2001
- _____, 「조선후기 호적 ‘호’의 편제와 성격」, 『대동문화연구』 40,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2
- 허원영, 「18세기 후반 순천부 농민의 존재양태와 농업경영: 『순천부서면가좌책』(1744)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문화연구』 47, 한국외국어대 역사문화연구소, 2013

Principles of Compiling Household Registers in the Late Chosŏn Dynasty

Kim, Kuen-tae

The Gajwachaek (an official document on the household and economic status of each region) of Cheonso-dong, Eonyang-hyeon in the Gyeongsang Province in 1875 displayed many cases in which the economic status of the registered household (*wonho*), such as their ownership of nobi or farming cattle and the sizes of their houses and farmland, was lower than the economic status of their subordinate household (*hyeopho*). This was because the social class of the actual household (*juho*) had to be considered before registering the *wonho* to meet the number of compulsory laborers set by the government. The records thus showed how the economic status of the actual household was secondary to registering the *wonho* for household registers. The census policy in the late Chosŏn dynasty made not only relatively wealthy families but also families lacking in economic power become registered households. The policy further allowed wealthy families, other than impoverished families, to be registered as *hyeopho* or *jeokoeho*. Impoverished *wonho* were not registered to the family register because of the greedy local governors and functionaries (*saekri*), that is, the corruption of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late Chosŏn dynasty. Such census policy was set in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 when there was a dramatic increase in the number of households. As the number of people who had to serve in the military increased sharply and the social status of the army plummeted after the reign of King Sejo, the higher peasant class began to avoid their military service. The lower peasant class, on the other hand, who were unable to overcome the burden of their military service collapsed, thereby resulting in a sharp rise in the nobi class in the late fifteenth century. Since the reign of King Sejo, the phenomenon of wealthy and higher ranking peasants being registered as *jeokoeho* and poor peasants becoming the *wonho*, thereby providing military service, became structuralized.

Key Words : Gajwachaek, class, Eonyang-hyeon, *hyeopho*, *jeokoeho*, *wonho*, Cheonso-dong